

“하이면민의 희망은 하이산업”

# 재단법인 하이산업 정관



- 창립총회 및 정관 제정 : 2014년 4월 10일
  - 창립일 : 2014년 5월 27일
  - 시행일 2020.10.1. 일부개정
  - 법인등록 번호 : 195022-0000604
  - 사업자 등록증 : 612-82-08679
  - 발전사업 허가증 : 제2013-5420000-38-5-00010
  - 주 소 :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
- 

<http://www.happyhi.kr>

# 재단법인 하이산업 정관

[제정 2014. 4. 10.][2020. 10.1.일부개정]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하이산업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률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하이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20.8.1.>

제3조(소재지)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
1.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운영 관리
2.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관한 사업
3.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
4.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
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민에 귀속된다.

## 제2장 임원

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
1. 이사 5명이상 15명 이내(이사장 포함)
2. 감사 3명 <개정.2020.7.1>

② 임원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. 다만 당연직 임원은 예외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자격 및 선임) ① 이사는 당연직과 권역별로 구분하며 고성군 하이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<개정 2020.7.1>

② 삭제 < 2020.7.1. >
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수석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.

④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 주무부서인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.

⑤ 선임된 임원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② 삭제 < 2020.7.1. >

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0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

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“1” 호 및 “2”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“3”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

**제11조(보수)**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및 여비지급)**

① 법인의 임원이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하이먼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임원 등이 법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 제3장 이사회

**제13조(구성)** 법인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14조(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15조(회의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④ 회의의 소집은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16조(정족수 등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-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서면 의결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을 얻어 이사회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.

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8조(의결 제척 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

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**제19조(재산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되,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이 출연한 부동산 또는 동산, 다만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.
- ④ 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재원)**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의 재산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
3. 사업 수입금
4.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 수입금
5. 기타 수입금

**제21조(재산의 관리)**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

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, 예산외의 의무의 부담 및 자금의 차입(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)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성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잉여금의 처리)** 재단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

1. 이월 손실금의 보전
2. 다음년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으로의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
**제23조(회계연도)**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4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결산)** 1. 법인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<개정 2020.8.1.>

**제26조(회계감사)** 법인의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보수 등)**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의 실비보상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28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**

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법인의 설립자

- 2. 법인의 임원
  - 3.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- 4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9조(정관의 변경)**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1.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고성군 발전소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2.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8.1.>

**제32조(시행규칙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**제33조(준용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에 관한 사항은 민법 또는 관련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재단의 법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설립당초의 임원)**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설립자)** 법인의 설립자는 다음과 같다.

성 명	주 소
고성군 하이면장 박점석	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1

< 별표1 > 기본 재산 및 하이산업(주) 에서 양수한 재산 목록<개정 2020.10.1.>

재산분류	종 류	평 가 액(원)	용 량	출연자
기본재산	현 금	금10,000,000원		하이산업(주)
	봉현발전소	2,498,000,000	600kw	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
	봉현 관리실1동	177,000,000	163.4㎡	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
	봉현 전기실1동	24,000,000	112㎡	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
	복지회관발전소	1,020,650,280	172kw	하이산업(주)
	봉현리 250-2	390,640,000	9,766㎡	하이산업(주)
	봉현리 250-6	19,200,000	480㎡	하이산업(주)
사무실	덕호리 452-1	복지회관 임대	사무집기	하이산업(주)

<별표2 삭제 2020.10.1.>

제5조(이,감사) 삭제 <2020.10.1.>

제6조(이,감사) 삭제 <2020.10.1.>

제7조(이,감사) 삭제 <2020.10.1.>

# 시 행 규 칙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“재단법인 하이산업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의 정관 제32조(시행규칙)에 의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립배경)** 본 법인은 하이면민의 뜻을 모아 면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이산업(주)를 설립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법인으로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 행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하이산업(주)를 해산하고 공익법인 재단법인 하이산업을 창립하였고 하이산업(주) 재산을 공여 받아 설립하게 되었다.

**제3조(기금의 운용범위)** 이 기금의 운용범위는 본 법인의 정관 제4조(사업)의 규정에 의하며, 본 정관 제5조(공여이익의 수혜자)는 고성군 하이면민으로 하고 마을단위로 수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2장 임 원

**제4조(임원의 선임)** 이사는 권역별(마을별)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임한다. 감사는 행정에서 추천한다.<개정 2020.7.1>

**제5조(상임이사)**본 법인의 업무가 과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

**제6조(상임이사의 선임 및 임기)**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.

## 제3장 이사회

**제7조(이사의 조직 구성)**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

## 제4장 자문 위원회

제8조(자문위원) 이사장은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
제9조(자문위원의 임기)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

제10조(자문위원 회의)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

## 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11조(재산)하이산업주식회사에서 출연한 복지회관 172kw 태양광발전소는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 부동산 및 잔여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12조(잉여금의 처리)

이월 손실금 보전. 다음년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의 이월 적립을 제외한 이익금은 하이면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지원방법 및 절차)이사회에서 결정한다

## 제6장 보 칙

제14조(장부 및 서류비치) 본 법인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
3. 재산목록
4. 이사회 회의록
5. 수입·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
6.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왕복서류

제15조(소유인감) 본 법인의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인영명 : “재단법인하이산업 이사장의인”
2. 규 격 : 장방형(2.5cm×2.5cm), 원형(지름1.8cm)

3. 글씨체 : 한글전서체

### 제16조(보고사항)

- 1.(재)하이산업 이사장은 하이면 이장협의회에서 (재)하이산업 현안 설명회를 반기 1회(년2회) 이상 한다.
- 2.이장협의회 요청 및 건의사항을 (재)하이산업 이사회 및 운영에 반영한다.
- 3.정기 이사회 개최 5일 내지 10일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이장협의회 및 개발자문 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.2020.7.1.>

## 부 칙

1.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시행규칙 제4조를 2017년5월23일 개정 별표1과 같이 시행한다.
3. 「정관」 제2장(임원)제6조, 제7조, 제9조, 「시행규칙」 제4조, 제16조의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시행규칙 별표1 권역별 임원 배정표(임원17명:이사15명.감사2명)

2016. 12. 31. 통계자료

임원수	구 분	마을	가구수	권역별 가구수	비 고
3	이사2 감사1	전체	1,279	1,279	이사회에서 선임
2	감사1 이사1	행정			당연직(감사1추천)
1	이사	두수	107	107	마을추천.이사회선임
2	이사	신덕	271	271	“
1	이사	군호	124	124	“
1	이사	부평	29	77	“
		신촌	48		“
1	이사	양촌	43	86	“
		음촌	21		“
		남산	22		“
1		봉현	103	103	“
1	이사	와룡	64	110	“
		내원	19		“
		외원	27		“
1	이사	사곡	47	113	“
		신흥	33		“
		정곡	33		“
1	이사	월흥	91	91	“
1	이사	덕명	109	109	“
1	이사	제전	31	88	“
		입암	57		“
17명	이사15.감사2	19마을	1,279	1,279세대	

시행규칙 별표1 권역별 임원 배정표(임원16명:이사13명.감사3명)

2019. 12. 31.통계자료

임원수	구 분	마을	가구수	권역별 가구수	비 고
		전체	1,369	1,369	
4	감사3 이사1	행정			당연직(감사2추천)
1	이사	두수	134	134	마을추천.이사회선임
2	이사	신덕	288	288	“
1	이사	군호	111	111	“
1	이사	부평	35	81	“
		신촌	46		“
1	이사	양촌	43	90	“
		음촌	25		“
		남산	22		“
1		봉현	110	110	“
1	이사	와룡	66	126	“
		내원	24		“
		외원	36		“
1	이사	사곡	51	130	“
		신흥	32		“
		정곡	47		“
1	이사	월흥	90	90	“
1	이사	덕명	117	117	“
1	이사	제전	28	92	“
		입암	64		“
16명	이사13.감사3	19마을	1,369	1,369세대	

2020년 7월 1일 시행 개정 내용

※(재)하이산업 정관 제2장 제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신.구대비표

제2장 임 원 (구)	제2장 임 원 (신)
제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	제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나. 감사 2명	나. 감사 3명 <개정.2020.7.1>
제7조 (임원의 자격 및 선임)	제7조 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①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고성군 하이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	①이사는 당연직과 권역별로 구분하며 고 성군 하이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<개정.2020.7.1>
②위촉직 이사는 법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.	②위촉직 이사는 법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.<삭제.2020.7.1>
제9조 (임원의 임기와 해임 )	제9조 (임원의 임기와 해임 )
②위촉직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발 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	②위촉직임원이 임기중에 결원이 발생 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삭제.2020.7.1>

시행규칙

제2장 (임원) (구)	제2장 (임원) (신)
제4조 (임원의 선임)	제4조 (임원의 선임)
위촉직 이사는 법인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 여 지역별 세대수별 안배를 위하여 시 행규칙 별표 1과 같이 추천을 받아 이 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임한다. 감사는 행정에서 추천한다.	이사는 권역별(마을별)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임한다. 감사는 행정에서 추천한다. <개정.2020.7.1>

## 제16조(보고사항)

- 1.(재)하이산업 이사장은 반기 1회(년2회) 이상의 (재)하이산업 현안 설명회를 하이먼 이장협의회에서 한다.
- 2.이장협의회 요청 및 건의사항을 (재)하이산업 이사회 및 운영에 반영한다.
- 3.정기 이사회 개최 5,10일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이장협의회 및 개발자문 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.2020.7.1.>

## 부칙

3. 「정관」 제2장(임원)제6조, 제7조, 제9조, 「시행규칙」 제4조, 제16조의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「정관」 제2조(목적), 제25조(결산) 제2항, 제31조(잔여재산의 귀속) 제2항의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# [2020.7.1.삭제, 개정, 수정 내용]

### 제1장 총칙

### 제2장 임원

#### 제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나. 감사 3명 <개정 2020.7.1>

#### 제7조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
①이사는 당연직과 권역별로 구분하며 고성군 하이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<개정 2020.7.1>

②위촉직 이사는 법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<삭제 2020.7.1>

#### 제9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

②위촉직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<삭제 2020.7.1>

### 시행규칙

### 제2장 임원

#### 제4조(임원의 선임)

이사는 권역별(마을별)로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임한다.

감사는 행정에서 추천한다.

<개정 2020.7.1>

제4조(사업)

제①항 가. 나. 다. 라. 마 호를 기호 1. 2. 3. 4. 5호로 수정

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제①항 가. 나 호를 기호 1. 2호로 수정

제9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

제③항 가. 나. 다 호를 기호 1. 2. 3호로 수정

제10조(임원의 직무)

제④항 가. 나. 다. 라. 마. 바 호를 기호 1. 2. 3. 4. 5. 6호로 수정

제18조(의결 제척 사유)

가. 나 호를 기호 1. 2호로 수정

제19조(재산)

제②항 가. 나. 다. 라 호를 기호 1. 2. 3. 4호로 수정

제20조(재원)

가. 나. 다. 라. 마 호를 기호 1. 2. 3. 4. 5호로 수정

제22조(잉여금의 처리)

가. 나. 다 호를 기호 1. 2. 3호로 수정

제28조(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

제②항 가. 나. 다. 라 호를 기호 1. 2. 3. 4호로 수정

제16조(보고사항) 1.(재)하이산업 이사장은 하이면 이장협의회에서 (재)하이산업 현안 설명회를 반기 1회(년2회) 이상 한다.

2.이장협의회 요청 및 건의사항을 (재)하이산업 이사회 및 운영에 반영한다.

3.정기 이사회 개최 5일 내지 10일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이장협의회 및 개발자문 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.2020.7.1>

부칙

3. 「정관」 제2장(임원)제6조, 제7조, 제9조, 「시행규칙」 제4조, 제16조의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목적) 이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률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하이면

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한다.<개정 2020.8.1.>

3.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도록 한다.<개정 2020.8.1.>